

#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362
----------	------

2018년 2월 23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. 2. 8. 박마루 의원 발의  
【찬성자 12명】
2. 회부일자 : 2018. 2. 12.
3. 상정일자 :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
【2018년 2월 23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마루 의원)

1. 제안이유
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4562호, 2017. 2. 8. 공포, 2017. 8. 9. 시행)됨에 따라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.

- 이에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를 확충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추가로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
-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사항 : 해당 없음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#### 1 개정안의 취지 및 개요

- 본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 규정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·시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,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2017. 8. 9. 시행)에 따라 신설<sup>1)</sup>된 ‘피해장애인 쉼터’의 설치·운영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쉼터 확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2 주요 내용 검토

##### 가. 목적 및 시장의 책무(안 제1조, 제3조)

- 개정안은 제1조 목적 조항의 장애인에 대한 ‘차별을 금지’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‘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방지’ 내용을 추가하여 ‘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’하는 것으로 하였음.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개정으로 ‘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’의 설치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(피해장애인 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규정이 신설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에도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,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·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학대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여 2017년 7월 13일부터 시행중에 있음.

- 목적조항에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 제1조는 위와 같이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며,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임.
- 그리고 개정안 제3조는 목적조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는 것으로, 이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8<sup>2)</sup>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‘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’와도 일치하는 것이며,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.

---

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8(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
3.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4.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
5.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
## 나.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(안 제10조)

- 개정안 제10조는 ‘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’의 설치·운영 규정을 신설하였는데, 이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<sup>3)</sup>에 근거한 것임. 다만, 해당 법률에는 ‘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’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업무나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은 없음. 그러나 개정안은 쉼터의 업무 및 운영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.
-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시·도(위탁 법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)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2015년부터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 시범 설치·운영 지원<sup>4)</sup>을 하고 있는데, 서울시는 (시립)행복플러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해당 지원 대상이 되어 현재까지 피해장애인 쉼터를 시범운영중임.

### <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현황(국비매칭사업)>

시설명	주소	운영주체	종사자	이용인원	기능
(시립)행복플러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	성북구 화랑로 134	사회복지법인 승가원	2명	5명	피해장애인 쉼터(2015년 3월부터 운영)

※ 서울시 제공 자료(단기거주시설 내 시범 운영 중)

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(피해장애인 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4) 전국 4개소(서울, 경기, 전남, 경북)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 피해장애인 쉼터 규정은 2017년 2월 8일 신설되어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“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매뉴얼”을 만들어 적용토록 전국 시·도에 공문을 시행(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-5263, 2017.8.4.) 하였음.
- 보건복지부의 “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매뉴얼”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주요 업무로 ‘숙식의 제공,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,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,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지 지원,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’으로 정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쉼터의 주요 업무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하고,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, 현재 운영 중인 피해장애인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것임.
- 서울시에서도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근거와 역할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에 대하여 상위법에 부합된다는 의견으로,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.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,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내용을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안정적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

#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마루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36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2월 8일

발 의 자 : 박마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장인홍·유 용·김동율·김제리·  
최호정·김태수·송재형·이순자·  
남창진·맹진영·유광상·이병해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4562호, 2017. 2. 8. 공포, 2017. 8. 9. 시행)됨에 따라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.  
이에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를 확충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추가로 규정함.(안 제3조제2항)
- 나.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차별을 금지하고”를 “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, 장애인차별과”를 “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대받은 장애인”을 “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(이하 “피해장애인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의3 전단 중 “장애인 학대”를 “장애인학대”로 한다.

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
3.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  4.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
  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복지법」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<u>차별을 금지하고</u>,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<u>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,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-----.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의2(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센터는 <u>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9조의2(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(이하 “피해 장애인”이라 한다)-----</u>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제9조의3(운영 위탁)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9조의3(운영 위탁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장애인학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10조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3.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4.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

및 자립 지원

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~ 제12조 (생략)

제11조 ~ 제13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